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꽃임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신속한 전략산업 기술의 개발·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, 인력양성, 국내·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책무 등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조문 정비(안 제5조)

다. 육성사업 추진 및 위탁, 지원, 지도·감독(안 제6조 ~ 안 제9조)

라.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0조 ~ 안 제17조)

마. 전략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우리 도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- 생산·수출·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함
- 현행 조례는 제정('03. 1. 3.)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들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**안 제1조**는 이 조례의 목적 조항으로,
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**안 제2조**는 조례 정의 규정으로,
개정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정의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
 - 2. “연구개발사업”이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3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- **안 제4조**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기본 조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함
- **안 제5조**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,
 -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로잡고, 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도록 새롭게 정립함
- **안 제6조**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, 현행 조례 제5조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
- **안 제7조 및 안 제8조**는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위탁과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, 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함
- **안 제9조**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도 및 감독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·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함
- **안 제10조**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설치 및 기능조항을 통합하였고, 기존의 자문회의에서 자문 및 심의로 기능을 격상함
- **안 제11조**는 위원회의 구성으로, 본 조례가 관장하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여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도정의 중심이 되도록 그 의미를 더한 것임

-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항으로 정비한 것으로, 불가피한 상황 및 효율을 위한 서면 회의(안 제14조), 서면 의견 청취(안 제15조)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제척, 해촉, 비밀누설금지, 회의록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조례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,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도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도정대응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·타당함
- (법적합성)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」는 자치조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이 관련 조례의 제·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정비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